

# 직원을 위해 할당된 AIR LIQUIDE 주식 증자 한국 직원 설명자료

2023 Air Liquide Group 단체주식청약제도(“myAL myShare 2023”)에 따른 L’ AIR LIQUIDE S.A의 주식 증자에 귀하를 초대하는 바입니다. myAL myShare 2023는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프랑스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의 청약 및 청약과 관련한 주요 세무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myAL myShare 2023를 통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본 문서와 브로셔를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청약

### 직원을 위해 할당된 주식 증자

L’ Air Liquide S.A. 주식은 동 회사의 직원을 위해 할당된 주식 증자에 따라 참여 Air Liquide Group 그룹사 직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될 총 청약 주식 수는 청약 양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약주식수가 전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될 총 청약 주식 수를 초과할 경우 청약 주식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 개인에게 고지됩니다.

### 자격 요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귀하는 청약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청약기간(2023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의 기간) 종료일 기준 L’ Air Liquide S.A. 또는 그 직접 또는 간접 과반지분소유 참여 자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 귀하가 재직중인 법인이 Air Liquide International Group의 주식취득제도를 준수한 경우
- 귀하의 근무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무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기간제 계약 또는 여러 계약에 따라 누적될 수 있으며, 연속되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 청약기간

청약기간은 2023년 11월 6일에 시작하여 2023년 11월 16일(해당일 포함)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약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2023년 11월 16일까지는 청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약가격

L’ Air Liquide S.A. 주식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1주당 청약가격은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 파리 증권거래소를 일컬음)에서 청약가격 결정일 이전 20거래일 동안의 L’ Air Liquide S.A. 주식 시초가(始初價)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결정(“기준 가격”)됩니다. 청약가격은 기준가격에서 20% 할인된 금액입니다. 청약가격은 2023년 10월 30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약가격은 유럽연합 내 유로존 통화인 유로화로 표시됩니다. 한국에서는 청약가격을 원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유로/현지 통화 환율은 L’ Air Liquide S.A.가 청약기간 이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요 유의사항:** 귀하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청약된 L’ Air Liquide S.A. 주식가치는 유로화와 원화간의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반대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 투자 한도

myAL myShare 2023을 통하여 투자 가능한 최대 청약금액은 귀하의 2023년도 예상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12개월에 걸쳐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매월 급여공제액은 귀하의 순 월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방법

원화로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2개월에 걸쳐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직원은 현지 고용주에게 주주 계좌에 주식이 등록된 다음 달부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승인해야 함). 급여 공제를 통한 각 분할지급액은 순 월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 귀하의 고용주가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즉시 지급.

## 노동법 관련 유의사항

본 청약제도는 귀하의 현지 고용주가 아닌 프랑스 회사 L' Air Liquide S.A.가 제공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약제도는 귀하의 근로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수정 또는 보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본 청약제도에 대한 참여가 귀하에게 미래에 유사한 성격 또는 가치의 혜택이나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사한 공모에 참여할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청약제도에 따라 귀하가 취득하거나 자격을 얻게 될 혜택이나 지급금은 귀하가 향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포함)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금 또는 기타 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 주식의 보관

귀하의 청약 주식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L' Air Liquide S.A. 주주 서비스 부서를 통해 주주가 직접 보관하게 됩니다.

## 외환규제

청약가격의 송금은 현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행정절차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할 금액 및 본 청약제도 입증서류(예, 청약 서류)를 현지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취득금액 송금 목적상, 개별 직원은 회사가 필요한 송금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권 신고

해외 모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수립한 직원 주식취득제도에 따라 과반지분소유 한국 자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은 여하한 한국 증권법상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사모로 간주됩니다.

## 처분제한 및 조기 처분사유

본 청약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청약된 주식에 대하여 5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적용되며(2028년 12월 7일에 종료됨), 현행 프랑스 법률에 따라 규정된 특정 조기 처분 예외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 직원의 가정이 이미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목적으로 아동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
-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법원에서 최소 한 명의 자녀가 거주하는 단독 혹은 공동의 통상 거주지가 해당 직원의 거주지가 되도록 명령한 경우;
- 직원, 배우자 혹은 자녀가 프랑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 직원 혹은 배우자의 사망하게 되는 경우;
-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직원, 자녀 혹은 배우자가 프랑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저축 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 주된 주거의 취득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저축 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및
- 직원이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전(前) 배우자 또는 전 동거인에 의한 가정폭력을 입은 경우.

상기의 조기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프랑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법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입증 자료의 제출에 따라, 고용주가 조기 처분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기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직원은 배우자의 사망, 장애, 가정 폭력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해당 사유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 처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귀하가 소속된 법인의 인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

L' Air Liquide S.A.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하한 배당금은 프랑스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뒤 국가에 따라, 유로화로 직원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고용주의 급여제도를 통하여 현지 통화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직원이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국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10% 증액될 수 있습니다(이하 “충성 상여금”이라 하되, 법적으로는 배당금 지급에 해당함).

## 의결권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직원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기 처분사유가 인정된 직원은 현지 자회사에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함을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은 조기 처분사유의 발생에 대한 적절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술한 내용을 전제로, 직원들은 5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거나 언제든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거주 직원들을 위한 세금에 관한 정보

본 정보서에서는 한국 세법 목적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고 투자금 처분시까지 한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청약제도 당시 유효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세무사항들은, 청약 당시 유효한 것으로서 한국 세법, 특정 프랑스 세법 및 관행에 의거하여 설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및 관행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L' Air Liquide S.A.와 귀하의 고용주는 본 청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조언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L' Air Liquide S.A. 주식 청약에 따른 세무 영향에 대한 확정적인 자문을 얻고자 하실 경우 귀하의 세무 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서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 L' Air Liquide S.A. 주식 청약 시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할인발행 시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할인액((a) 주식이 귀하의 계좌에 교부된 매수일 기준 주식의 시장가와 (b) 청약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됨)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6.6%~49.5%의 누진소득세율(주민세 포함)에 따라 과세되며, 다음의 사회보장분담금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고용주 및 직원 각각 3.999100% 부담, 최대 월 4,412,290원), 국민연금(고용주 및 직원 각각 4.5% 부담, 최대 월 248,850원), 고용보험(직원이 0.90%, 고용주가 1.15%~1.75% 부담), 산재보험(고용주만 0.70%~18.60% 부담)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고용주만 0.06%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3% 부담).

귀하의 고용주가 할인발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직원은 주식을 매수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관련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단,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당국이 직원으로부터 관련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징수할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관련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분담금은 없습니다.

#### 무이자 분할납부 시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내재 이자율(4.6%)은 누진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사회보장분담금이 부과됩니다.

#### 배당 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 ● 프랑스에서의 과세

L' Air Liquide S.A.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2.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sup>1</sup>.

##### ● 한국에서의 과세

직원이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전액입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6.6%~49.5%(주민세 포함)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직원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신고 및 납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중 연말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납부된 세금은 한국에서의 세금 산정 목적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인정받게 됩니다. 배당금, 이자 및 임차료 등을 종합한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에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입니다. 배당금, 이자 및 임차료 등을 종합한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의 세무서 신고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되어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표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L' Air Liquide S.A. 주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처분제한기간이 만료(또는 조기처분의 승인)됨에 따라 세금 및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아니요.

<sup>1</sup>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 리스트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귤라,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세이셸, 터크스 앤 케이커스 제도 및 바누아투.

## L' Air Liquide S.A. 주식 매각 시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하한 이익(매각대금에서 과세대상이 된 할인액(직원은 주식을 매입한 해의 다음 해 5월 중으로 할인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함)을 차감한 값에서 직원이 납입한 청약가격을 차감한 차액으로 산정됨)에 대하여 22%의 주식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자산당 연간 최초 2,500,000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최대 3억원의 이익(2,500,000원을 기본 공제함)에 세율 22%가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이익(2,500,000원을 기본 공제함)에는 보다 높은 27.5%가 적용됩니다.

## 주식 청약, 보유 및 매각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주식 취득 자금 송금 시의 외환 관리 목적상 보고/확인 절차와 상기 세금신고를 제외하고, 기타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연중 어느 월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월간 잔액이 5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중으로 외국의 해외금융계좌(즉, 해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를 한국 조세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